제 1장 / 경기장

제 1조 (경기장 확보)

대회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(이하 KoPVA 라고 한다)가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.

KoPVA는 경기규칙에 규정된 배구코트가 설치된 실내 경기장을 확보하고,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 만약 확보된 주 경기장에서 개최 불가 시 제3의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. (경우에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)

제 2조 (경기장 설비)

① 경기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(경기규칙서 배치도면 참조)

- 1. 스코어보드(전자식) 및 비상용 스코어보드 (세트별 상세점수 표기 가능)
- 2. 네트 및 비상용 네트 세트(안테나 포함)
- 3. 경기용 배구 지주 및 비상용 배구 지주
- 4. 감독관석(경기위원/심판위원/전문위원 좌석, 마이크, 테이블보 포함)
- 5. 감독석 및 팀 벤치(9개)
- 6. 경기 기록석 및 개인 기록석(테이블 보 포함)
- 7. 의무석(테이블 보 포함)
- 8. 기자석(투명 아크릴 보호대 설치) 및 중계방송석(어떠한 광고물도 부착금지)
- 9. 태극기, 대회기,
- 10. 장내 방송 설비
- 11. 조명(평균 1000 룩스 이상)
- 12. 경기방송 카메라석(경기기록석 좌우측)
- 13. 비디오 촬영구역
- 14. 리베로 조끼(남녀 각2벌)
- ② 경기장 내부에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대기실(홈팀, 방문팀, 심판[남,여]) : 잠금장치 필수
- 2. 소방시설(소화기 등)

제 3조 (팀 벤치)

벤치는 경기기록석 양측에 설치하며 10명이 착석 가능하여야 한다. 벤치 착석 인원은 최대 5명(감독 포

함)이고 감독이 결정한다. 그러나 경기 기록지에 기재되고 0-2(bis)에 등록되어야 한다.

제 4조 (감독관석)

경기 및 심판 감독관석은 경기 기록석 뒤 단상 위에 설치한다.

제 5조 (경기장 내 방송 및 이벤트)

- ① 경기 운영책임자는 장내 아나운서 1명을 두어 경기 의전 진행 및 경기 진행에 관한 최소 한의 정보를 관중에게 제공하도록 한다.
- ② 장내 아나운서는 경기 시작 전 또는 경기 중에 공식 대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장내 아나운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시 대처 요령(비상구 위치, 대처 방법 등)을 경기 개시 전에 장내 방송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의무)

경기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 조치를 취하여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경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의무진은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야 한다.

- 1. 경기장 내에 응급처치사 또는 간호사 각 1인 배치
- 2. 경기 중 선수 부상에 대비하여 현장에 응급 후송 차량 대기 및 지역 응급조치병원을 지정
- 3.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경기장 내에 자동 제세동기. 산소 호흡기 및 들 것 비치

제 7조 (개인 기록석)

- ① 경기기록 전산 통계를 위한 개인 기록석은 체육관 사정에 따라 위치한다.
- ② 개인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관리원의 좌석은 개인 기록석과 함께 위치하며, 전산관리원과 개인 기록석에는 독립된 인터넷 라인, 전원, 프린터 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.
- ③ 개인 기록석 전면에는 기록원 및 전산장비 보호를 위해 투명아크릴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.

제 8조 (경기장 검사)

- ① 각 경기장은 공식 경기 개막 2일 전까지 경기 운영위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경기 운영위원장은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팀은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.

제 2장 / 경기

제 9조 (개막전)

공식 개막전은 각 대회의 특성에 따라 진행된다.

제 10조 (개막전 식순)

- ① 개막식의 식순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.
- 1. 선수 입장

- 2. 국민의례(애국가 1절 포함)
- 3. 개회사
- 4. 축사
- 5. 개회선언
- 6. 선수 퇴장
- ② 경기별 경기 의전은 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.

제 11조 (대회 명칭 · 경기의 주최 및 주관 및 협찬)

대회의 명칭은 "2022 0000000000000전국장애인 배구대회"라 한다.

대한장애인0000가 주최하고 KoPVA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미카사. 동아오츠카. 아이바나리. 리즈랩. 바이알. 이뮨. 닥터에스리. 널 셋. 데지엄. 드림에이블이 협찬한다.

제 12조 (경기규칙 · 참가팀, 임원, 지도자, 선수의 자격)

대회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경기규칙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항은 KoPVA가 결정한다.

- ① 대회의 참가 자격은 0000년도 대한 장애인배구협회와 KoPVA에 등록한 팀(임원, 지도자, 선수)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팀에 한한다.
- ② 징계 중인 임원(지도자 포함)은 참가 신청은 할 수 있으나, 벤치 착석 및 선수 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.
- ③ 징계 중인 선수의 경우 징계 기간이 해제된 날부터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기 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.
- ④ 대회 중 임원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⑤ 추가 참가 신청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 추가 등록을 필한 후, 공문으로 참가 신청 후 KoPV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경기 참여 인원은 한 팀당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외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⑦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은 유효하고 출전선수의 배번은 대회종료 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 13조 (사용구 및 경기용기구)

- ① 대회 사용구 및 경기용기구는 KoPVA가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한다.
- ②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공식 사용구인 미키사로 한다.
- ③ 코트는 선수들이 안전과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한 바닥재가 설치되어야 하며, 설치가 되지 않은 대회는 KoPVA의 공식대회로 인정되지 않는다.

제 14조 (순위 결정 방식)

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.

- ① 최종 순위 및 중간 순위는 경기 승점으로 결정한다.
- ② 경기 승점의 결정 방식 (차등 승점제)

| 구분 | 승리팀 | 패배팀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세트스코어 3:0 또는 3:1 | 3점 | 0점 |
| 세트스코어 3:2 | 2점 | 1점 |

③ 동 승점발생 시 승리경기 수 순으로, 승리경기 수가 같으면 득실점수비율(정규리그 총 득점÷총 실점)순으로, 득실점수비율이 같으면 세트비율(정규리그 총 승리세트 ÷총 패배세트)순으로, 세트비율이 같으면 동률인 팀간의 승자승으로 순위를 정한다. 단, 3개 이상의 팀 간의 승점. 승리경기 수. 득실점수비율. 세트비율이 같은 경기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팀간의 경기만을 산정한 승리경기수. 득실점수비율. 세트비율로 순위를 결정한다.

제 15조 (경기위원장의 책무)

- ① 경기위원장은 경기 1주일 전까지 경기 운영계획서를 KoPVA에 제출하고 ,대회 종료 3일 이내에 경기 결과보고서를 KoPVA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경기위원장은 선수, 임원, 경기/ 및 경기진행요원 등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.
- ③ 경기개시 1시간 전부터 경기 주최, 주관측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네트 등 경기시설에 영향을 주는행동을 해서는 안되며, 경기 중 기록석 및 선수벤치 주변에는 KoPVA 및 인제군 운영관계자 외에는접근이 금지된다.

제 16조 (경기진행요원 등)

경기운영책임자는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원을 두어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.

- ① 코트매니저, 장비매니저
- ② 전광판 운영원, 전산 입력원
- ③ 장내 아나운서
- ④ 의무 요원
- ⑥ 기타 필요 인원

제 17조 (경기운영 책임)

경기감독관과 경기 운영책임자가 경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, 경기운영책임자는 코트매니저와 장비매니저를 임명해 정해진 위치에 상시 대기시켜 경기 중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즉각 조치토록 한다.

제 18조 (심판위원장의 책무)

- ① 심판위원장은 경기 1주일 전까지 심판 운영계획서를 KoPVA에 제출하고 ,대회종료 3일 이내에 심판결과보고서를 KoPVA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각 경기에는 주심 1명, 부심 1명, 선심 2명, 경기기록원 1명, 보조기록원(리베로 기록) 1명, 대기심

1명 등 7명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(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
③ 심판위원장은 심판, 심판감독관 등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 19조 (경기감독관 및 심판감독관)

- ① 경기감독관은 경기운영위원장이, 심판감독관은 심판운영위원장이 매 경기 배정한다.
- ② 경기감독관은 경기운영 전반을 관리,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경기 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장 설비 및 부대시설을 점검한다.
- 2. 경기의 중단, 폭력행위, 경기 중 선수단 및 구단 관계자의 퇴장 등 경기장 질서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KoPVA와 경기운영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.
- 3.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결과를 총괄 관리하며 경기종료 후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KoPVA 와 경기운영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4. 경기감독관은 개인기록원이 경기 진행상 이상이 발생하여 보고를 접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사실유무를 확인한다.
- ③ 심판감독관은 심판관련 사항의 전반을 관리, 감독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 경기 개시 9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한다.

제 20조 (감독 및 코치 복장)

감독. 코치. 트레이너, 의무 등은 정장 혹은 같은 색상과 스타일의 트레이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
제 21조 (응원)

경기감독관은 경기 중 응원단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방지와 쾌적한 관람문화 정착에 노력할 책임이 있다.

- ① 경기 진행용 음향(스피커 등 음향기기 설치) 및 응원음향(운영 금지)은 관중의 경기관전과 중계방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② 응원 플래카드 운영은 자율에 맡기며 팀은 응원플래카드 2개(가로 10m 세로 1.2m 이하)만 사용할 수 있다. 플래카드는 지정된 응원석 내에 거치 또는 휴대한다.
- ③ 경기 중(작전타임 포함) 응원석에서 응원 단장의 호각 사용은 무조건 금지된다.
- ④ 응원은 상대팀에 대해 야유 및 비방을 할 수 없으며 관중에게 야유를 유도해서는 안된다.

※위반 시에는 팀 및 학교 등에 경고 및 징계 조치

장내아나운서는 심판 서비스 휘슬 후 랠리가 종료될 때까지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.

- ⑤ 모든 응원행위와 응원 관련 장치장식물이 경기진행과 관중관람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경기감독관은 해당팀 경기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팀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⑥ 코트 내 이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⑦ 응원과 관련하여 양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두 팀은 KoPVA가 파견한 경기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.

제 22조 (경기장 광고)

KoPVA가 승인한 대회의 모든 마케팅 권리는 KoPVA에 있으며 KoPVA가 승인한 "데지엄(DESIUM)"이 모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.

- ① 주최측은 경기장 플로어에 A-보드 광고판 및 플로어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, 제공하여야한다.
- ② 경기장 지주 커버, 심판대 및 네트 그물에는 KoPVA 통합마케팅 Item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.
- ③ 경기장에 설치하는 펜스 광고판의 크기는 세로의 경우 1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④ 시설팀은 KoPVA 광고물 및 장치장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,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"데지엄(DESIUM)"은 타이틀스폰서명이 표기된 공식대회 타이틀을 각종 시즌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등)에 사용한다.

제 3장/경기 운영

제 23조 (공식경기일정)

경기 일정은 대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의 대회 일정에 준한다.

제 24조 (토너먼트 및 챔피언전)

- ① 종목별 토너먼트 및 챔피언결정전은 예선 조별리그 결과 각 조 상위 2개 팀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- ② 종목별 조별리그 후 8강 토너먼트, 4강 토너먼트는, 챔피언결정전 순으로 한다.

제 25조 (경기개시시간)

개막전은 경기일 오전 9시반에 시작한다.(상황에 따라 탄력 진행)

제 26조 (경기일시 및 경기장소 변경)

-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경기 7일 전까지 공문으로 KoPVA 에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KoPVA는 경기일정 및 장소의 변경사유가 천재지변, 긴급 상황 등 부득이한 변경신청으로 판단 될 경우 상기 1항에 관계없이 홈팀의 변경신청에 의하여 경기일시 및 장소변경을 승인한다.

제 27조 (재개최 및 재경기)

- ①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KoPVA 경기규칙에 따라 재개최 및 재경기를 실시한다.
- ② 재개최의 일시, 장소는 KoPVA가 해당 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경기의 속개나 재경기의 실행방법은 경기규칙 17.3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.

제 28조 (승패 결정)

공식 경기에서 양 팀 중 어느 팀 일방의 귀책사유로 경기 개최불능 또는 경기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

- 그 귀책사유에 따라 경기규칙 6.4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단. 해당경기의 개인기록은 공식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제 29조 (재심요청)

- ① 감독은 경기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감독관, 심판감독관에게 지체없이 경기중단을 요구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주심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(사실판정 제외)
 - 2. 로테이션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경기기록원 또는 전광판 조작 실수로 점수관리가 잘못된 경우
- ② 재심요청이 플레잉 동작에 관한 판정이거나 정당하게 적용된 규칙에 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, 심판은 감독에게 구두로 1차 경고를 주며 부당한 재심요청을 반복 제기하면 감독에게 자격상실(완전퇴장)의 제재를 가한다.
- ③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은 팀 감독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면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재심회의를 열어야하고,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재심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 단, 경기감독관, 심판감독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기록원을 부를 수 있다.
 - 1. 규칙 적용에 대한 재심요청의 경우, 주심을 재심 회의를 참석하도록 요청한다.
- 2. 경기기록에 관련된 사항이면 부심을 재심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기록원도 참석시킨다.
- ④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져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주심은 양팀 선수들을 코트에서 가벼운 워밍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한다.
- ⑤ 재심회의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기록지를 확인하여 정정하며 이에 따른 점수도 수정된다. 주심은 이에따라 정정된 자리와 점수로 즉시 경기를 속개한다.
- ⑥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/심판감독관은 관련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(7) 재심회의 결과 재심요청이 기각되면 심판의 판정이 유효한 상태에서 경기는속개된다.
- ⑧ 재심요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팀 대표나 지도자 명의의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⑨ 소청위원회 판결은 종심으로 판결되면 최종적이다. (소청위원회는 전문위원회가 겸한다.)

제 30조 (경기장 도착)

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경기시작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.

제 31조 (경기 시간의 엄수)

-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정시에 경기가 시작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중계방송 사정으로 인해 경기당일에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 시작 시간의 변경은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경기감독관이 결정하며, 경기감독관은 변경 경기시간을 심판감독관, 심판, KoPVA 소관부서, 양팀 감

독 및 경기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경기 운영책임자는 장내 아나운서를 포함하여 경기운영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변경된 시간을 알려야 한다. 다만 이 경우 경기시작 시간 변경을 10분 이내로 늦추는 것은 가능하나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다.

- ③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없이 어느 한 팀이 경기개시 시간 내 경기장에 출장하지 못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/심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전패를 선언한다.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기/심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40분간 경기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다음경기의 시작시간은 자동 연기된다. 40분이 초과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팀에서 요청시 경기 개시 연기를 20분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다음경기의 시작시간은 자동 연기된다. 60분이 초과될 경우 부전패를 선언한다.
- ④ 경기종료 후에는 감독, 코치, 선수 중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지체없이 코트를 떠나선수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하며, 심판과의 혹은 심판을 향한 어떠한 형태의 말도 허용되지 않는다.

제 32조 (출전선수 수 및 명단 제출)

각 팀의 출전선수 수 및 명단은 경기 시작 40분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벤치착석 인원(전력분석원 포함)과 선수의 이름, 배번이 기록된 선수명단에 대한 출전 여부를 코칭스텝에게 확인 받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3조 (경기감독관 및 심판의 명단 확인)

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개시 전 제출된 출전선수 명단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34조 (경기기록 통계)

- ① 메인 전산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시 백업시스템으로 교체하여, 메인과 백업시스템 모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작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기록원은 로테이션 폴트 등 경기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랠리가 종료된 즉시 경기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35조 (표창)

KoPVA는 대회 종료 후 KoPVA 상벌규정에 따라 다음의 시상을 실시한다.

- ① 시상은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고 시상한다.(단 준결승까지는 경기가 종료 후 바로 시상 할 수 있다.)
- 1) 단체상
- 가. 챔피언결정전 : 우승, 준우승, 3위 2팀(상금, 트로피, 상장)
- 2) 개인상 : 선수상(9인-상금, 트로피), 지도자상(상금, 상패), 심판상(상금, 상패)
 - 가. 선수상 : 최우수선수상, 세터상, 공격상, 브로킹상, 서브상, 수비상,
 - 나. 지도자, 심판상 : 최우수지도자상, 우수지도자상, 최우수 심판상, 우수 심판상
- ② 대회기간 중 불미스러운 행동을 야기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 시킨 선수와 지도자는 시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
제 36조 (페어플레이)

경기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심판뿐 아니라 임원, 상대팀, 팀동료 및 관중에 대해서도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.

제 37조 (유니폼 승인 및 등록)

- ① 각 팀은 대회에 착용할 유니폼, 리베로 유니폼의 디자인 시안을 대회 참가신청서와 함께 KoPV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회 중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새로운 유니폼의 시안을 KoPVA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
제 38조 (유니폼 색상)

①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.(리베로 제외) 경기당일 일부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리베로 유니폼

- 1. 리베로는 소속팀 다른 선수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(상의 70% 이상의 색상 차별성유지)의 유니폼을 입는다.
- 2. 리베로가 착용한 유니폼이 다른 선수의 유니폼과 확연히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리베로는 '리베로 조끼'를 착용하여야 한다. '리베로조끼'는 경기감독관이 제공한다.
- 3. 부상 등의 사유로 교체된 리베로는 팀이 준비한 다른 선수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거나 경기감독관이 제공하는 '리베로 조끼'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제 39조 (유니폼 상의)

- ① 유니폼 상의 앞, 뒷면 중앙에는 옷 색깔과 대조되는 한 가지 색깔로 KoPVA에 등록된 선수의 고유 번호를 붙여야 한다. 번호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
 - 1. 뒷면 번호는 높이가 최소한 20 cm 이상이어야 한다.
 - 2. 앞면 번호는 높이가 최소한 15 cm 이상이어야 한다.
 - 3. 번호의 굵기는 최소한 2 cm 이상이어야 한다.
 - 4. 선수의 고유 번호는 1 에서 19 까지로 제한한다. 같은 팀 내에서 중복된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주장표시는 앞면 번호 밑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로 2 cm 길이 8 cm를 초과해선 안된다.
- ③ 유니폼 상의 뒷면 상단에는 최소한 5 cm 높이로 선수의 한글 이름을 넣어야 한다. 유니폼에 기입된이름은 팀 엔트리에 등록된 것과 같아야 한다.
- ④ 소매의 유무와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. 단,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.
- ⑤ 팀명칭과 광고의 표기
 - 1. 유니폼 상의 앞면에는 팀명칭 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.

그러나 광고의 종류, 광고명 등이 국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⑥ 유니폼 상의를 하의에 넣을 수 있게 제작 할 경우는 길이의 제한이 없다. 하지만, 유니폼 상의를 하의에 넣지 않게 제작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 밑단이 유니폼 하의 상단에서 5cm 이상 10cm 이하로 내려오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제 40조 (유니폼 하의)

- ① 선수의 번호는 하의 앞면의 우측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하며, 상의의 번호와 동일하여야 한다. 크기는 세로 4~6cm 글자 폭 1cm로 한다.
- ② 유니폼 하의에도 유니폼 제작회사 및 스폰서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.
- ③ 허리와 길이는 헐렁하거나 느슨하지 않아야 한다.

제 41조 (신발 및 양말)

- ① 한 팀 선수들의 신발의 종류 및 색상은 자율로 한다.
- ② 한 팀 선수들의 양말의 종류는 자율로 한다. 단, 색상은 같은 색상을 착용하여야 한다.

제 42조 (보호대)

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의 종류 및 색상은 자율로 한다.

제 43조 (기타)

본 대회요강에서 정해있지 않은 유니폼과 관련된 사항은 KoPV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4조 (제재)

본 대회요강을 위반한 구단 및 선수에 대하여 KoPVA의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①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. 퇴장 사유의 경·중에 따라 잔여 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KoPVA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.
- ②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 될경우 KoPVA에서는 해당 팀, 선수, 지도자, 임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.
- ③ 기타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KoPVA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, 처리한다.

(경기 중 문제 발생 시 KoPVA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)

제 45조 (기타)

본 대회요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oPVA 제 규정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 긴급조치 발생 시 회장이지명하는 이사만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다.

부 칙('22.04.25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